

#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8528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4.

제안자 :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### 가. 심사경과

건명	의안번호	대표 발의자	발의일	회의정보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	2215430	최민희의원· 이상희의원	'25.12.19.	- 제432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전체회의 (2026.02.25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 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- 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과학기 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(2026.03.10.) 상정, 축조심사 및 의결(대안반영폐기)
	2216168	황정아의의원	'26.01.20.	- 제432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전체회의 (2026.02.25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 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- 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과학기 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(2026.03.10.) 상정, 축조심사 및 의결(대안반영폐기)

나. 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 
(2026.03.10.)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, 이를 통  
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.

다. 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6.03.11.)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·의결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개정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지정·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.

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,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정된 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제11조의2 신설).

나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).

##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
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원) ① 정부는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”을 “범위,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”으로 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

지정하고,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위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 
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--  
-----.